

2005년 6월 25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



- ▶ 2005. 6. 24 배포
- ▶ 총 2 쪽

보 도 자 료

- ▶ 외국인력정책과 홍정우 사무관
T E L : 2110-7080
E-MAIL : epd01@chol.com
F A X : 502-6855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최신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1社 1制度 원칙』 이 폐지된다.”

- 산업연수생 사용 사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 신청이 가능해져 사업주의 선택권 넓어져... -

□ 2005. 6. 24(금) “1社 1制度 원칙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시행령 개정 前에는 한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됨에 따라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 선택권이 넓어져 사업장에서 기존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를 함께 고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장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기존 연수생은 고용인원에 포함)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 허용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 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11인 이상 50인 이하	10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301인 이상 500인 이하	40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 1社 1制度 원칙이 폐지되기 이전에는 기존의 산업연수생 활용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사업주의 제도 활용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 산업연수생 체류기간만료 등으로 부족인력을 보충해야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족 인력에 대해 고용허가제 활용을 원하고 있으나

- 1사 1제도 원칙으로 인해 숙련된 산업연수생을 포기해야 하는 등 애로가 발생하여 고용허가제 활용 자체를 포기

○ 특히, 산업연수생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황(총 13,774개 사업장, 79,458명)에서 1사업장 1제도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우량 중소기업의 고용허가제 활용 기회를 원천 차단**하여

※ 산업연수제는 공단 입주기업, 기숙사 완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제도간의 **공정한 경쟁** 및 **원활한 제도통합(이행)**을 저해한다는 비판(제도 고착화)도 제기되었다.

▲ 우량 중소기업은 산업연수제, 영세 소규모 기업은 고용허가제로 시장 이분화

▲ 경영상태가 나은 중소기업이 연수생만을 활용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수준을 정부가 열악하게 조장

※ 현재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이 대부분(약 73% 수준)을 차지

○ 금번 1社 1制度 원칙 폐지로 사업장의 **원활한 외국인력 공급** 및 **사업주의 불편해소, 고용허가제로의 자연스러운 제도 일원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